

## 제 7 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

### 제 7.1 조 공 표

1.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, 규정 및 일반 행정절차를, 인터넷상을 포함하여, 공표한다.
2.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질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질의처를 지정하거나 유지하며, 그러한 질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.
3. 가능한 한도에서,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관세 사안을 규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미리 공표하고, 이를 채택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

### 제 7.2 조 상품의 반출

1. 양자간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, 각 당사국은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
2. 제1항에 따라, 각 당사국은 자국 세관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보장한다.
  - 가. 자국 관세법의 준수를 보장하는데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,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의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, 상품을 반출하게 하는 절차
  - 나. 도착 시에 상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통관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하는 절차
  - 다.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도착

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, 그리고  
라. 적용가능한 관세·조세 및 수수료에 대하여 자국 세관당국이 최종  
결정을 내리기 전에,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저해함이 없이, 수입자가  
상품을 세관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<sup>1)</sup>)

### 제 7.3 조 자동화

각 당사국은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고,  
가. 전자시스템이 세관사용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.  
나.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.  
다. 국제무역데이터의 양자간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 
시스템과 호환가능한 전자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. 그리고  
라. 세계관세기구의 관세데이터모델과 세계관세기구의 관련 권고사항 및  
지침에 따라 일련의 공통적인 데이터 요소와 처리절차를 개발하도록  
노력한다.

### 제 7.4 조 위험관리

각 당사국은 자국 세관당국이 검사활동을 고위험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 
하고 저위험 상품의 통관 및 이동을 간소화하는 평가 및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 
자동화된 위험관리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

### 제 7.5 조 협력

1. 이 협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,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

---

1) 당사국은 수입자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자국 세관당국이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관세·조세 및 수수료의  
지급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담보·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 
수 있다.

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정정책의 중요한 수정이나 수입을 규율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관련된 그 밖의 유사한 진행사항에 대한 사전통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
2. 양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각 당사국의 법 및 규정의 준수를 달성하는 데 협력한다.

- 가. 특혜관세대우의 신청, 특혜관세대우 신청절차 및 검증절차를 포함하여, 수입 또는 수출을 규율하는 이 협정의 규정의 이행 및 운영
- 나. 관세평가협정의 이행 및 운영
- 다.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, 그리고
- 라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관세 사안

3. 당사국이 수입을 규율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,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수집된 특정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4. 제3항에 따른 당사국의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, 그 정보를 요청하는 목적을 명시하고, 다른 쪽 당사국이 그 정보를 찾아서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특정하여 요청하는 정보를 적시한다.

5. 정보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자국 법과 자국이 당사국인 관련 국제 협정에 따라 그 정보를 담은 서면 답신을 제공한다.

6. 제3항의 목적상, 불법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공적 또는 사적인 출처로부터 획득한 관련 사실정보를 기초로 한 의심을 말하며, 그 사실 정보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.

- 가.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을 규율하는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전력
- 나. 제조자, 생산자 또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상품 이동에 관여한 그 밖의 인이 수입을 규율하는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전력
- 다. 특정 제품 분야에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

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상품의 이동에 관여한 일부 또는 모든 인이 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전력, 또는 라. 정보의 요청 당사국과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 특정한 요청의 맥락에서 충분하다고 합의하는 그 밖의 정보

7.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의 수입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수출품이 수입을 규율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, 특히 밀수 및 유사한 위반을 포함한 불법행위에 관련된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다른 쪽 당사국이 판정하는 데 도움을 줄 그 밖의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
8. 양자간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, 각 당사국은 위험관리 기법을 개선하고, 국제공급망표준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며, 상품의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통관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고하며, 직원의 기술 숙련을 향상시키고, 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의 사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자문 및 지원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
9. 양 당사국은 공동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관세분석 기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노력한다.

10. 양 당사국은 수입을 규율하는 각 당사국의 규정 집행 능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.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,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데 도움이 될 접촉선의 설치를 포함한 의사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유지하며 수입 문제에 대한 양자간 조정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.

## 제 7.6 조 비밀유지

1.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그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, 그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.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될 것이며 다른 쪽 당사국이 정보 요청에 명시한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고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그

당사국에게 정보를 제공한 인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.

2.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도, 그 정보를 접수한 당사국은 법 집행의 목적상 또는 사법절차 과정에서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.

3.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제1항에 합치되게 행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당사국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.

4. 각 당사국은 공개되면 그 정보를 제공한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그 당사국의 관세법 행정에 따라 제출된 비밀 정보를 무단 공개로부터 보호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

## 제 7.7 조 특송화물

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 이러한 절차는

- 가. 특송화물을 위하여 별도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규정한다.
- 나.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한다.
- 다.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,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일 적하목록의 제출을 허용한다.
- 라. 가능한 한도에서,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.
- 마.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, 화물이 도착한 경우, 필요한 통관서류가 제출된 후 4시간 이내에 특송화물이 통관되도록 규정한다.
- 바. 특송화물의 중량 또는 관세가격에 관계없이 적용된다. 그리고
- 사.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,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.<sup>2)</sup>

---

2) 사호에도 불구하고, 당사국은 특송화물이 항공 화물운송장이나 그 밖의 선하증권을 수반하도록 요구할

## 제 7.8 조 재심 및 불복청구

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대한 자국의 결정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가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.

- 가. 그 결정을 내린 직원 또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행정적 재심<sup>3)</sup>, 그리고
- 나.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

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각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재심을 실시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당사국이 그 정보를 제7.6조제4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

## 제 7.9 조 별 칙

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품목분류 · 관세평가 · 원산지국가 및 특혜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것을 포함한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벌칙, 그리고 적절한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

## 제 7.10 조 사전심사결정

1. 각 당사국은,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<sup>4)</sup>,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세관당국을 통하여 다음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서를 발급한다.

- 가. 품목분류

---

수 있다.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당사국은 수입제한 상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.

3) 대한민국의 경우, 가호에 따른 행정적 재심은 대한민국 국세심판원의 심판을 포함할 수 있다.

4)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수입자 ·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표자를 통하여 사전 심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.

- 나.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
- 다. 관세환급, 납기 연장 또는 그 밖의 관세감면의 적용
- 라.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
- 마.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된 후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재반입된 상품이 제2.6조(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)에 따라 무관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
- 바. 원산지국가 표시
- 사. 상품이 쿼터나 관세율할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, 그리고
- 아.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사안

2. 각 당사국은 자국 세관당국이 요청을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사전심사 결정을 발급한다. 다만, 신청인은 당사국이 요구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을 신청하는 상품의 견본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.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할 때, 그 당사국은 신청인이 제공한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한다.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항에 따라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발급거부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.

3.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심사결정이 발급된 날 또는 사전심사결정에 명시된 다른 날로부터 사전심사결정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.

4. 발급 당사국은 신청인에게 통보한 후 사전심사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. 발급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이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에 기초하였던 경우에 한해서만 사전심사결정을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.

5. 각 당사국은 신청인에게 사전심사결정의 행정적 재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.

6. 자국 법의 비밀유지 요건을 조건으로,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전심사결정을, 인터넷상을 포함하여, 공표한다.

7. 신청인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전심사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또는 상황을 누락하는 경우 또는 사전심사결정의 조건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는 경우, 수입당사국은 민사·형사 및 행정적 조치, 금전상의 벌칙, 또는 그 밖의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.